

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1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제안이유

2005. 12. 21자로 고시된 2006년 ~ 2007년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)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,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

##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,072명으로 함(안 제2조)

(1)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
(2)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

2,995명⇒3,059명(증 64명)

나.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(안 제3조)

##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

나. 예산조치 : 별첨 1 참조

다.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: 해당 없음

라. 입법 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3,008명”을 “3,07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2,995명”을 “3,059명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3,008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95명</u></li> </ol> <p>제3조(한시정원) 영 제17조제5항의 <u>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3명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8247호)

**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**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**제17조 (한시정원)**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.

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·도

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9조(정원의 규정)** ①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**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**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

**제3조(표준정원)**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”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“보정정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□ **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**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2005.12.21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3,072	3,164	

## 시·도교육청 정원채정 현황

(2006. 3. 6 현재)

시·도 교육청	표준정원 (A)	보정-표 준정원과 의차이 (B-A)	보정정원 (B)	채정정원 (C)	채정정원 대비율(%)	
					표준정원 (C/A)	보정정원 (C/B)
서울	7,553	226	7,779	7,553	100.0%	97.1%
부산	3,905	117	4,022	3,905	100.0%	97.1%
대구	2,728	81	2,809	2,728	100.0%	97.1%
인천	3,203	96	3,299	3,203	100.0%	97.1%
광주	1,662	49	1,711	1,711	102.9%	100.0%
대전	1,763	52	1,815	1,763	100.0%	97.1%
울산	1,607	48	1,655	1,607	100.0%	97.1%
경기	12,204	366	12,570	12,204	100.0%	97.1%
강원	3,988	119	4,107	3,988	100.0%	97.1%
<b>충북</b>	<b>3,072</b>	<b>92</b>	<b>3,164</b>	<b>3,008</b>	<b>97.9%</b>	<b>95.1%</b>
충남	4,378	131	4,509	4,378	100.0%	97.1%
전북	4,178	125	4,303	4,178	100.0%	97.1%
전남	5,078	152	5,230	5,121	100.8%	97.9%
경북	5,566	166	5,732	5,566	100.0%	97.1%
경남	5,605	168	5,773	5,605	100.0%	97.1%
제주	1,226	36	1,262	1,230	100.3%	97.5%
<b>합계</b>	<b>67,716</b>	<b>2,024</b>	<b>69,740</b>	<b>67,748</b>	<b>100.0%</b>	<b>97.1%</b>

<별첨-1>

## 비 용 소 요 추 계 서

#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

### 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(정원채정 비율 반영)

- 정원의 총수 : 3,008명 → 3,072(증64명)
- 일반직(32명) : 5급 2명, 6급 9명, 7급 14명, 8급 7명
- 기능직(32명) : 7급 2명, 8급 4명, 9급 10명, 10급 16명

### 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<b>총 계</b>	<b>2,379,984</b>	
<b>인건비</b>	<b>1,911,606</b>	
- 기본급	145,177	< 2006년도 예산편성 단가 기준 > ○ 일반직 - 5급( 2명) 23호봉 기준 - 6급( 9명) 23호봉 기준 - 7급(14명) 12호봉 기준 - 8급( 7명) 5호봉 기준 ○ 기능직 - 7급( 2명) 30호봉 기준 - 8급( 4명) 23호봉 기준 - 9급(10명) 14호봉 기준 - 10급(16명) 7호봉 기준
- 수 당	99,840	
- 정액급식비	95,640	
- 교통보조비	119,312	
- 명절휴가비	198,854	
- 가계지원비	59,656	
- 연가보상비		
- 기타직보수		
- 일용인부임		
<b>물건비</b>	<b>94,320</b>	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		
-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		
- 직책급업무추진비		
- 직급보조비	94,320	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	
<b>이전경비</b>	<b>374,058</b>	
- 성과상여금	79,541	
- 연금부담금	244,713	
- 국민건강보험금	49,804	
- 연금지급금		